

## 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종료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핵심기술 관리공백 해소를 위한 개정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가 2023. 6. 2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이후 2023. 8. 7.의 경과로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기간이 종료되어, 의견 제출에 따라 일부 변경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만큼 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안의 입법과정도 더 진척되었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안은 기존 법의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여 국가 주도의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강화하고, 다양한 유출행위를 세밀하게 규정하여 산업기술 유출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기업의 핵심기술 관리에 상당한 변화가 예고되는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지난 2023. 6. 28. 뉴스레터에 이어<sup>1</sup> 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안의 등장 배경과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1. 산업기술보호법의 개정 배경

2022년 기준, 직전 5년간 국내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은 알려진 것만 연 20여건에 이르며, 특히 해외유출이 확인된 83건 가운데 33건은 국가 핵심기술로서 파악되었습니다.<sup>2</sup>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여 국가 안보와 기술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기술보호법의 개정을 추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의 유출 원인을 현행법의 기술유출 대응 한계로 파악하여 변화하는 산업기술유출의 방식을 포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핵심기술의 관리를 강화하는 방식의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가령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자를 처벌하고 있지만(법 제36조 제1항 등), 최근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기술유출에 대하여 목적범 형태의 규정을 적용하기에는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국내에서 발생하는 기술유출은 국내 사모펀드를 통한 기술유출, 기술보유기관의 인수합병 등 일반적인 투자와 구별하기 어렵거나 비정형적인 방식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규제기관의 폭넓은 관리·감독 권한 없이는 실질적인 유출방지 제도 운영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아가,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핵심기술 보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지정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으며,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이른바 '이직알선'에 대한 규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래 개정안에서는 이와 같은 행위들을 폭넓게 규제함으로써 국외로

유출되는 기술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참고로, 해외 각국에서도 국가 안보 및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기술 유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다양한 규제를 운용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과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이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서는 간주수출(Deemed Export) 제도, 이행점검 제도(Compliance Monitoring) 등을 통하여 중요한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정의를 통하여 다양한 기술유출의 가능성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외국인 및 외국무역법 등의 '거주자(居住者)'와 '비거주자(非居住者)' 정의조항, 미국과 마찬가지로 간주수출 제도, 이행점검 제도 등을 운용하며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있고, 영국에서는 국가안보투자법 2021(National Security and Investment Act 2021)의 간주수출 제도, 이행점검 절차 등을 통하여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있는바, 산업통상자원부의 이번 개정안은 국제적 산업기술 보호의 입법 흐름과 부합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 2. 산업기술보호법의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

산업기술보호법의 일부개정안에 따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조항	주요내용
가. 정의규정 신설	제2조	"외국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해외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 개념을 법률에서 정의함.
나. 판정 신청 근거 규정 추가	제9조의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상기관에게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다. 등록관리 근거 규정 신설	제9조의3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을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라. 수출심의 조건 부과 근거 추가	제11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심의를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수출이행 금지를 명확히 규정함.
마. 해외인수합병 승인 규정 개선	제11조의2	국가핵심기술 대상기관의 해외인수합병시 승인 신청 절차를 개선하여 외국인에게도 의무부과, 심의시 조건 부과, 심사결과 전 이행금지,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승인이 가능하도록 함.
바. 이행여부 점검 근거 신설	제11조의3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수리시 부과된 조건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사. 이행불이행에 대한 시정명령 근거	제13조	개선권고를 받은 대상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아. 무단유출 및 유인 행위 침해행위 규정	제14조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되도록 규정함.
자. 범죄 구성요건 변화	제36조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범죄구성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변경하여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되도록 함.
차.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추가	제39조	제9조의2에 따른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의3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을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추가함.
카. 이행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제40조	국가핵심기술 대상기관 해외인수합병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중지·금지·원상회복 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3. 시사점

최근 각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며 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가 신설·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국가·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유출에 대한 강화된 규제와 대응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와 같은 조치는 국내 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관련 기업에게는 국제 거래 과정에서 추가적인 규제 준수와 국가핵심기술 대상기관으로서의 보안조치를 준수하여야 할 의무 등 기술 보호와 관련된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커졌습니다. 따라서 첨단기술 등 관련 규제의 산업군에 속한 기업으로서는 입법 동향 및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의 영업비밀/산업기술 팀은 오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분야에서 기업고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ontacts

### 이광욱

T. (+82) 2 6003 7535

파트너변호사

E. [kwlee@yoonyang.com](mailto:kwlee@yoonyang.com)

### 이근우

T. (+82) 2 6003 7558

파트너변호사

E. [klee@yoonyang.com](mailto:klee@yoonyang.com)

### 이창우

T. (+82) 2 6003 7580

파트너변호사

E. [cwlee@yoonyang.com](mailto:cwlee@yoonyang.com)

### 유현상

T. (+82) 2 6182 8716

변호사

E. [hsryu@yoonyang.com](mailto:hsryu@yoonyang.com)

### 강석준

T. (+82) 2 6182 8505

변호사

E. [kangsj@yoonyang.com](mailto:kangsj@yoonyang.com)

### 배종우

T. (+82) 2 6182 8745

변호사

E. [jwbai@yoonyang.com](mailto:jwbai@yoonyang.com)

<sup>1</sup> 화우 뉴스레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국가첨단전략 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2023. 6. 28, <https://www.hwawoo.com/kor/insights/newsletter/11514>

<sup>2</sup> 박남수 기자,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업기술 해외유출 83건 중 33건 국가핵심기술", 정보통신신문, 2022. 9. 30.